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양식업 구조개선 및 폐업지원금 등 지원 근거 마련〉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99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입법 배경 및 총괄 검토	4
가. 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4
나. 총괄 검토	6
다. 관계 부처 의견	10
2. 주요 내용 검토	11
가. 양식업구조개선계획 수립 등	11
나.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고지·신청 및 폐업지원금 지급 등	17
다. 이의신청, 감정평가, 지원금 환수 등	22
라.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벌칙, 과태료 및 부칙	25
[참고자료]	2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성일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8.

3. 회 부 일 : 2024. 11. 9.

II. 제안이유

최근 해수온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이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집단폐사를 유발하는 등 양식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함에 따라 양식업자의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국내에 해외 수산물 유입증가로 국내 양식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전기료, 유류비, 사료값 등 경영비는 상승하여 양식업자의 경영난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양식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업 폐업 및 어장 이동 등 전반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양식업 폐업을 하는 자에게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양식업 구조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10까지 신설 등).

Ⅲ.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어업자단체 등에 양식업 구조개선 추진의 필요성 등을 알리도록 하고,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어업자단체 등은 양식업 폐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양식시설을 매입하거나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업을 폐업한 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6 신설).

라. 폐업대상자의 선정이나 폐업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7 신설).

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양식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8 신설).

IV.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및 총괄 검토

가. 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해외 수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식업자의 폐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양식업의 구조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식업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어업생산량의 감소를 보전하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2019년 이후 감소 추세¹⁾이며, 수온상승으로 인하여 양식적지가 축소되고 있고 기존 양식장의 폐사율이 높아지는 등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또한, 2024년의 경우 고수온 특보 발령일수가 71일로 2020년의 3배이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도 특보도입(2017년) 이후 평균 피해액의 4배로 조사됨²⁾.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어장변동, 양식적지의 축소 등으로 양식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양식업

1) '00년 65만톤, '10년 136만톤, '15년 167만톤, '19년 240만톤, '20년 231만톤, '23년 227만톤

2) 24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약 1,159억원으로 특보도입 이후 평균 피해액의 4배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제도 및 시스템을 유연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정안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의 과다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과 연근해어업의 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감척사업의 예를 참고하여 양식업의 구조개선(폐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양식시설 매입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을 통해 양식업자의 폐업을 지원하여 양식업자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업계의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크게 양식업 구조개선 계획 수립, 양식업자의 폐업계획서 제출 및 폐업지원금 등 지급, 이의신청 및 폐업지원금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의 절차로 구성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양식산업기본계획에 양식업 구조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양식업 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을 지정·고지하고, 양식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폐업

대상자를 선정함.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업 대상자로 선정된 양식업자 등에 대하여 양식시설에 대한 매입, 폐업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④ 양식업자 등은 폐업지원금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확정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 감정기관 등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나. 총괄 검토

- ☐ 개정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피해의 누적 등 양식업계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식업의 폐업을 지원함으로써 양식업의 구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피해 확대와 양식적지 축소 등의 경영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 개정안은 현재 어선어업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참고한 것으로, 개정안의 구조 및 주요 내용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과 상당 부분 유사함. 다만, 구조개선의 정의와 규정 체계, 기본계획의 포함항목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³⁾과 경쟁력 제고라는 어업구조개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연근해 어선 감척, 어업 종류 통합, 어구 사용량 및 규모 조정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어업구조개선’을 정의하고 있으며³⁾, 이러한 구조개선의 방법 중 하나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양식업 구조개선의 목적이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정하지 않고 개별 조문을 통해 구조개선이 곧 양식업의 폐업을 뜻하는 것으로 추론되는 구조임.

- 다음으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은 기본계획에서 어업구조개선의 목표와 기본방향,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재원규모와 연도별 재원 조달 등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감척 시행계획에서 정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기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양식업 구조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나머지 구조개선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은 양식업구조개선계획에서 정하고 있음.

3)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³⁾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 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하여 어선·어구(漁具)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 다음으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권에 의해서도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어업자단체등의 신청에 의해서만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서는 어업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제4조)을 두고 기본계획 작성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⁴⁾ 개정안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은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일정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토록 하는 등⁵⁾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방안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등의 차이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다음의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경우, 연근해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을 세우고,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

4)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5)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제20조(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달성에 필요한 감척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음⁶⁾.

이에 양식업 구조개선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의 정책 목적과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양식업 규모 산출 및 연차별 구조개선 목표치 등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양식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정책 목적과 구조개선 목표치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양식업 구조개선’이 뜻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조개선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거나 약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및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의 법체계적 연계성을 고려해 일부 절차적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밖에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양식업 구조개선과 관련해 상습 재해지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여 단계적인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고, 관련하여 향후 법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구 및 법안 발의 경과 등을 살펴 개정안과 함께 심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6) '19~'23년 연근해어선 감척 실적 및 목표 현황

(단위: 척, %)

구분	'19	'20	'21	'22	'23	합계(A)	목표(B)	감척비율(A/B)
근해어선	13	53	86	67	76	295	300	98.3
연안어선	360	176	109	105	176	926	1,000	92.6
합계	373	229	195	172	252	1,221	1,300	93.9

* 자료: 해양수산부

다. 관계 부처 의견

□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장환경이 악화된 양식업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 다만, 해양수산부의 경우 양식업 구조개선과 보상은 재해 상습발생 해역(‘기후변화 복원해역’)에 속한 경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현재 부처에서 검토 중인 ‘기후변화 복원해역(가칭)’ 제도⁷⁾와 결합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지사의 신청이나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의 필요성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일반해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해역 내 양식장에 대하여 3년 동안 입식·시설량 조절, 양식품종 변경, 면허지 이전 등의 재구조화 방안을 실시하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구조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해역을 ‘특별해역’으로 지정해 양식장 폐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

이 경우, 양식장 구조개선은 그 대상이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된 해역 내의 양식장으로 한정되고, 구조개선의 내용도 해역의 종류(일반해역, 특별해역)에 따라 단계별로 입식·시설량 조절, 양식품종 변경, 면허지 이전 등을 먼저 실시한 후 양식장 폐업을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는 상당 부분 다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임.

7)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2. 주요 내용 검토

가. 양식업구조개선계획 수립 등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현행법 제6조에 규정된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양식업 구조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개정, 제66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생략)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양식업 구조개선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장의2 양식업의 구조개선
<신설>	제66조의2(양식업구조개선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양식업 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식업구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구조개선이 필요한 양식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및 양식업 폐업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양식업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양식업 구조개선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구조개선계획 중 양식업 폐

	<u>업 대상자 모집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양식업구조개선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업 여건의 변화, 특정수산자원의 변화 및 양식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u>
--	---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양식업 구조개선 추진을 위해 현행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양식업 구조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려는 양식업 구조개선은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선정, 폐업지원금 산출 및 지급 등의 절차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므로⁸⁾, 기본계획에서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항목 비교]

현행법상 기본계획 포함항목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항목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포함항목과 같음 + <u>양식업 구조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u>

□ 다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상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의 경우,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외에도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재원 규모와 연도별

8)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감척 세부사업(3145-300) 예산으로 2023년 1,335억 7,800만원, 2024년 1,621억 700만원, 2025년 2,200억 6,700만원을 편성함.

재원 조달’, ‘어업구조개선의 평가’,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감척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목표나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등의 내용은 감척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구조인데 반해, 개정안의 경우 양식업 구조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만을 기본계획의 포함 항목으로 하고 있음.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과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등 비교]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 정 안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제5조)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안 제6조)
1. <u>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u> 2. <u>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u> 3. <u>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규모와 연도별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u> 4. <u>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9. <u>양식업 구조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u>
어선·어구 감척시행계획(제6조)	양식업구조개선계획(안 제66조의2)
1. <u>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u> 2. <u>어선·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u> 3. <u>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u> 4. <u>어선·어구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u> 5. <u>어선·어구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선·어구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1. <u>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u> 2. <u>구조개선이 필요한 양식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u> 3. <u>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및 양식업 폐업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u> 4. <u>양식업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u> 5. <u>양식업 구조개선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이처럼 두 법 간 기본계획의 포함항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개별법인 점과 달리, 개정안은 양식업 전반을 규율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려는 양식업 구조개선이 양식업 전체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양식업자의 권익에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당한 국가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시행령을 통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밖에,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⁹⁾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및 해당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경우 그러한 내용이 없고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양식업의 구조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구조개선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실시와 결과 반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임.

9)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고지·신청 및 폐업지원금 지급 등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5까지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업자단체 등의 폐업 계획서를 받아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을 지정하고, 최종적으로 폐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66조의6은 폐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양식시설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3(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구조개선이 필요한 양식업을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양식업 구조개선 추진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2.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3.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신 설>	제66조의4(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의 신청) ① 제66조의3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양식업 폐업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식업 폐업 및 양식시설 처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식업 폐업 및 양식시설 처분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3. 양식업 폐업 효과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양식업 폐업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의 지정 절차 및 양식업 폐업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의5(양식업 폐업 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6조의4에 따라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된 양식업을 경영하는 양식업자의 신청을 받아 양식업 폐업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양식업의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양식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양식업 폐업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양식업 폐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의6(양식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6조의5에 따라 폐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u>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양식시설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u> <u>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u> <u>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업 구조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식업을 폐업한 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직업 교육·훈련</u> <u>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u> <u>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폐업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와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	--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지정, 폐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실시를 위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절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을 지정함에 앞서 수협 등 어업자단체나 이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함)에게 양식업 구조개선 추진의 필요성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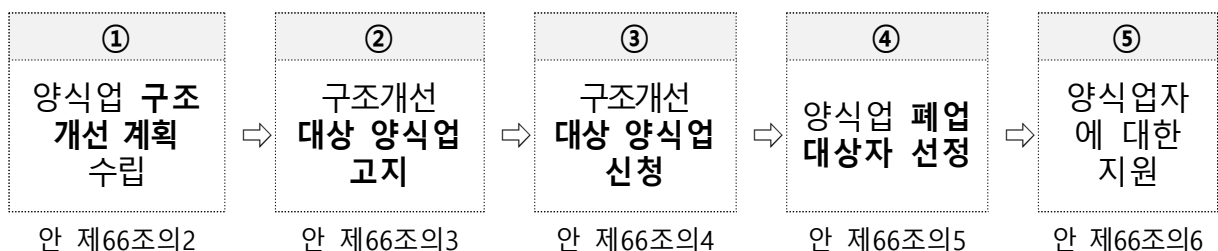
추진계획,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해당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양식업 폐업 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을 지정하여 해당되는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함.

이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와 같이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된 양식업을 경영하는 양식업자의 신청을 받아 양식업 폐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폐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양식시설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또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폐업 대상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 직업교육, 고용정보 제공, 전업 장려금 보조·융자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양식업 구조개선 절차]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우선 개정안은 ‘감척 대상 어업에 대한 고지 → 감척 대상 어업 지정 → 감척 대상자 선정 →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과 기본적인 틀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임.

다만,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은 감척 대상 어업에 고지를 함에 있어 어업자단체등에게 어선·어구 감척의 목표량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제66조의3)의 경우에는 이러한 목표량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 경우, 어업자단체등은 구조개선의 목표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알지 못한 채 구조개선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될 소지가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은 어업자단체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과 달리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직권에 따른 지정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음.

이 경우 어업자단체등의 신청이 저조하면 사실상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청이 저조한 경우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직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이의신청, 감정평가, 지원금 환수 등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폐업대상자의 선정 또는 폐업지원금의 결정에 대한 양식업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안 제66조의7), 폐업지원금 확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전문기관에 용역조사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66조의8), 구조개선을 통해 매입한 양식시설에 대한 처리절차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금 환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9, 제66조의10).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7(이의신청 특례) ① 제66조의5에 따른 폐업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6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식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 설>	제66조의8(감정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에 관한 전

	문조사연구·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u><신 설></u> 제66조의9(매입한 양식시설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에 따라 매입한 양식시설을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식업 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각 또는 양여(讓與) 2.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3. 공공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② 양식시설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66조의10(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폐업지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폐업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려받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2) 검토의견

- 안 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10까지는 폐업대상자 선정 및 폐업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이의신청, 폐업지원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매입된 양식시설에 대한 처리, 부당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등의 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의 입법례¹⁰⁾를 참고한 것이며,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
- 다만, 안 제66조의10은 양식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폐업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폐업지원금을 받은 양식업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의 면허를 승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식업에 다시 종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재차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에 종사하여 양식업 구조개선의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20조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0) 제15조(이의신청 특례), 제18조(감정평가 등), 제19조(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제20조(지원금의 환수)

라.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벌칙, 과태료 및 부칙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감정평가 등의 의뢰를 받은 자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안 제77조), 폐업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감정평가 등을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안 제79조), 안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실 확인 시 거짓으로 증언 또는 진술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80조),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u> ----- ----- ----.
<신 설>	1. 제66조의8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2.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제81조(과태료)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u>업무에 종사하는 자</u> 제79조(벌칙)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66조의6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11. 제66조의8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짓으로 한 자 제8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2) 검토의견

- 개정안 제77조, 제79조 및 제81조는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벌칙 적용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과 대상 및 처벌수준이 동일하며,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

다만, 안 부칙의 경우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양식업 구조개선의 정책 목적 및 양식업 구조개선 목표치 등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는 양식업자 등에 대한 설명과 재정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에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의 실시에도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적절한 시행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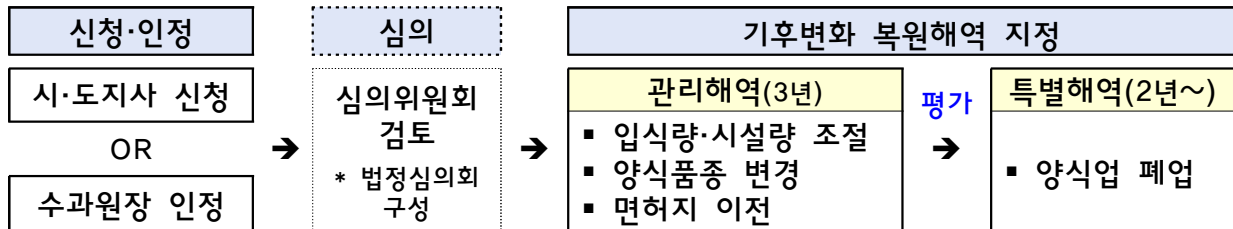
기후변화 복원해역 제도(안)

□ 기후변화 복원해역

- (개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상습 발생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역 내 양식장 재구조화

*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10ha 이상 규모의 기후관리 필요 해역

- (지정절차) 시·도지사 신청이 있거나 수과원장이 지정 필요성 인정 → 심의위원회의 검토 → 기후변화 복원해역 지정(품종별)
 - 최초에는 기후변화 복원 일반해역으로 지정 → 3년이 경과한 후 평가(수과원) → 필요 시 '특별해역' 지정



- (의무·지원사항) 복원해역 어업인은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양식장 재구조화 방안을 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 관리해역 양식장은 3년간 ①입식·시설량 조절, ②양식품종 변경, ③면허지 이전 중 1개 이상의 방안을 필수적으로 이행
 - 특별해역 양식장은 2년 이내에 양식업 폐업 실시